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안  
(송영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69
----------	-----

발의연월일 : 2008. 7. 22.

발 의 자 : 송영선 · 이한성 · 유성엽  
구본철 · 현기환 · 박종희  
강석호 · 이진삼 · 황우여  
이해봉 · 김성순 · 이상민  
의원(12인)

제안이유

남북 교류에 진척이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남북 이산가족간 생사 확인이나 서신교환, 전화통화 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임. 남북 당국은 남북 이산가족의 오랜 아픔을 조금이라도 달래기 위해 전향적인 자세로 적극 협의하여야 할 것이나, 상봉행사 등 남북 이산가족 교류 사업은 소수의 인원에 제한된 전시성 행사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북한당국과의 적극적 협의 및 지원을 촉구하며, 아울러 남북 당국간 이산가족 문제의 획기적인 발전이 있기까지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국가는 이산가족의 고령화를 감안하여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집행하여야 함(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 나. 국가는 각급 남북회담에서 남북 이산가족 교류 확대·지원 방안을 의제로 삼아야 함(안 제3조제3항).
- 다. 통일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남북 이산가족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동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고 매년 1회 진행경과를 보고하여야 함(안 제4조제1항 및 제3항).
- 라.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을 위하여 이산가족의 현황 및 교류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함(안 제5조제1항).
- 마.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효율적인 관리·이용을 위하여 이산가족정보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안 제5조제2항).
- 바.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 1세대의 고령화를 감안하여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소재파악 사업이 전면적·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7조제1항).
- 사. 통일부장관은 이산가족 찾기 신청이 있는 경우 6월 이내에 생사확인 및 소재파악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함(안 제7조제2항).

아.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의 서신교환·전화통화, 상봉행사의 정례화 및 인원확대, 상봉 후 교류지속, 긴급가사방문, 이산가족 교류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민간차원 이산가족 교류활동 촉진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8조).

자.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 생사확인, 소재 파악 등에 필요한 물자 또는 경비를 북한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차.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의 남북 이산가족 교류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10조).

파. 남북 이산가족 교류를 주선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사업비와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산의 고통을 완화하고 남북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남북 이산가족”이란 이산의 사유와 경위를 불문하고, 현재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으로 흩어져 있는 8촌 이내의 친·인척 및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를 말한다.
2. “남북 이산가족 교류”란 서신·전화·통신·방문·재회·재결합 등 방법을 불문하고 남북 이산가족 사이에 이루어지는 모든 접촉 및 접촉을 위한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집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남북 이산가족의 고령화를 감안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확대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각급 남북회담에서 남북 이산가족 교류 확대·지원 방안을 의제로 삼아야 한다.

제4조(남북이산가족교류촉진기본계획) ① 통일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남북 이산가족 교류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남북 이산가족의 현황 등 실태조사 및 정보관리
2.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소재파악
3.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의 인원확대 및 정례화
4. 남북 이산가족 상봉 후 교류 지속을 위한 방안
5. 남북 이산가족간 서신교환·통신 등 교류수단의 확보 및 운용
6. 남북 이산가족 교류에 필요한 행정절차의 간소화
7. 민간차원의 남북 이산가족 교류활동 지원
8. 남북 이산가족 교류 촉진을 위한 대북 협상
9. 남북 이산가족 1세대의 고령화에 따른 긴급 대책
10. 그 밖에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진행경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및 정보관리)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

인 및 교류 촉진을 위하여 이산가족의 현황 및 교류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효율적인 관리·이용을 위하여 이산가족정보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 및 이산가족정보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이산가족 찾기 신청) ① 남한의 이산가족이 북한의 가족을 찾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이산가족으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이산가족 찾기 신청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③ 그 밖에 이산가족 찾기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생사확인 및 소재파악)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의 고통화를 감안하여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소재파악 사업이 전면적·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생사확인 및 소재파악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남북이산가족교류촉진)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의 자유로운 서신교환 및 전화통화가 이루어지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북한 당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의 정례화 및 인원확대를 위하여 북한 당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이 상봉을 한 경우에도 추가적인 교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 북한 당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직계가족 및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위독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가사방문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통일부장관은 관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이산가족 교류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야 한다.

⑥ 통일부장관은 민간차원의 남북 이산가족 교류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북한에 대한 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 생사확인, 소재파악 등에 필요한 물자 또는 경비를 북한에 지원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지원을 할 때에는 사전에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남북이산가족민간교류경비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이산가족 교류 촉진을 위하여 민간차원의 남북 이산가족 교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남북이산가족민간교류경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통일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적십자사 등 유관단체에 남북이산가족민간교류경비 지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④ 남북이산가족민간교류경비의 지급절차 및 금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이산가족교류주선단체) ① 정부는 남북 이산가족 교류 등을 주선하는 민간단체(이하 “교류주선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사업비와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통일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적십자사 등 유관단체에 교류주선단체 지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④ 교류주선단체에 대한 지원절차·자격·금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관계 부처의 협조)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 교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부처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부처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벌칙)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에 따른 남북이산가족민간교류경비를 지급받은 때
2. 제11조에 따른 교류주선단체 지원금을 받은 때

##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통일부에 이산가족 상봉 신청을 한 자는 이 법 제6조제1항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 이산가족 실태조사, 이산가족정보통합관리(안 제5조)
- 북한에 대한 지원(안 제9조)
- 남북이산가족민간교류경비지원(안 제10조) 및 이산가족교류추진단체 지원(안 제11조)

## 2. 미첨부 근거 규정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

## 3. 미첨부 사유

- 북한에 대한 지원은 북한 당국과의 협의 후 예산에 반영될 사항이며, 이산가족 실태조사 및 이산가족정보통합관리는 행정안전부, 통계청, 법원행정처 등 기타 유관단체와의 행정적 협조가 필요한 사항임 (이산가족정보통합관리센터는 현재 운용되고 있음). 또한 남북이산가족민간교류경비지원 및 이산가족교류추진단체 지원은 현재 시행중임.

## 4. 작성자

송영선 의원실 차광명 비서관 788-2816